

국외제조사에 의한 [] 선임서
[] 해임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	7일
① 국외제조사	사업장명	제조(생산)국		
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		
	(전자우편 주소:)			
	주소			
② 선임(해임) 대상자	사업장명	사업자등록번호	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이메일주소:)	
	주소			
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		
③ 선임(해임) 분야	1. []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(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) 2. []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(법 제110조제2항) 3. [] 대체자료 기재,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이의신청(법제112조제1항, 제5항, 제6항)			
④ 선임인 경우 선임 기간				
⑤ 해임인 경우 선임번호		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6조제2항에 따라 국외제조자는 위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[] 선임 [] 해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국외제조사 : (서명 또는 인)

선임(해임) 대상자 : (서명 또는 인)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붙임 서류	1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증명서류 1부 2.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(해임) 여부 증명서류 1부			
작성방법				
1. ①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한 자로서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는 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국외제조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. 2. ②란은 국외제조자가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선임(해임)하고자 하는 선임(해임) 대상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. 3. ③란에서 1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)~2(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)는 함께 선임해야 하며, 3(대체자료 기재, 유효기간 연장 승인 또는 이의신청)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1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)~2(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)는 함께 선임해야 합니다. 4. ④란은 선임하는 경우(해임서인 경우는 제외) 선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선임기간을 기재합니다.(선임계약서에 별도의 선임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5년을 경과할 수 없음)				
처리절차				
선임(해임)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	→ 검토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	→ 결재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	→ 통지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